

제177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011. 9. 2.)

조례안 검토 보고서

총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박노해]

【 목 차 】

1. 거창군 공공디자인조례안----- 1
2.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9

다. 공공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규정(안 제14조~제20조)

-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5조)
-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변경, 가이드라인 수립 시 자문 등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6조)
- 회의, 위원의 제척, 수당 등에 관해 규정(안 제17조~제20조)

라. 그 밖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행규칙을 규정함(안 제21조~제22조)

마.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을 규정함(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관법」 제3조, 제4조, 제13조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6조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 「도로법」 제2조제1항제4호, 제5조, 제6조, 제38조~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
- 「도로표지규칙」 제2조, 제6조, 제11조
- 경상남도 경관조례」 제2조, 제5조

나. 예산조치: 예산미확보(필요시 확보예정)

다. 합 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도시건축과(도시계획담당)

라. 입법예고(2011. 7. 08 ~ 7. 28.)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본계획의 내용, 주민의견 반영, 가이드라인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 제8조에서는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의 협조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총괄기획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공공디자인안의 공모, 업무협약, 협의 시기, 사업비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는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능, 회의, 운영세칙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 밖에 조례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제정·운영토록 하고 있음.
- 이 제정 조례안은 지금까지 공공건축물, 도시구조물, 가로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통일성 없는 사업 시행으로 도시경관이 조화롭지 못함에 따라
 -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역통합디자인과 지속가능한 공공디자인을 적용하여 도시미관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관리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전국 27개 도·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고 경남도내에서는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없음.
 - 조례로 제정함에 있어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췌

□ 「경관법」

[시행 2008. 3.21][법률 제8974호, 2008. 3.21,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환경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이란 자연, 인공요소 및 주민의 생활상 등으로 이루어진 일단의 지역환경적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2.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원칙) 경관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되고 관리되어야 한다.

1.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 및 문화를 드러내고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주민의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것
2. 개발과 관련된 행위는 경관과 조화·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3. 우수한 경관을 보전하고 훼손된 경관을 개선·복원함과 동시에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은 개성 있는 요소를 가지도록 유도할 것
4. 각 지역의 경관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행정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

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문화적 특성의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②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경관사업을 승인하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09. 2.19] [국토해양부령 제101호, 2009. 2.19, 전부개정]

제11조(차로의 분리 등) ① 도로에는 차로를 통행의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표시하거나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4차로 이상

인 도로에는 도로기능과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분리대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분리대의 폭은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값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 중앙분리대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시속 80킬로미터 미만인 경우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중앙분리대의 분리대 부분에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중앙분리대의 폭은 제18조에 따른 시설한계가 확보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⑤ 차로를 왕복 방향별로 분리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두 줄로 표시하는 경우 각 중앙선의 중심 사이의 간격은 0.5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12조(길어깨) ① 도로에는 차도와 접속하여 길어깨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도 또는 주정차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차도의 오른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일방통행도로 등 분리도로의 차도 왼쪽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과 설계속도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터널, 교량, 고가도로 또는 지하차도에 설치하는 길어깨의 폭은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1미터 이상으로, 일반도로의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길이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또는 지하차도에서 오른쪽 길어깨의 폭을 2미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소 750미터의 간격으로 비상주차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길어깨에는 측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대의 폭은 설계속도가 시속 8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0.5미터 이상으로 하고, 80킬로미터 미만이거나 터널인 경우에는 0.25미터 이상으로 한다.

⑥ 차도에 접속하여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의 폭은 길어깨의 폭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5조(자전거도로)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전거, 자동차 및 보행자의 통행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자전거도로의 구조와 시설기준에 관하여는 「자전거 이용시설의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보도) 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 등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로에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도는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차도에 접하여 연석을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는 25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2. 횡단보도에 접한 구간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자전거도로에 접한 구간은 자전거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③ 보도의 유효폭은 보행자의 통행량과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최소 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지역의 도로와 도시지역의 국지도로는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설·개설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보도는 보행자의 통행 경로를 따라 연속성과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설치하며, 보도에 가로수 등 노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상시설 설치에 필요한 폭을 추가로 확보하여야 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 2009.10.23] [법률 제9636호, 2009. 4.22,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7.24>

1. "옥외광고물"이라 함은 상시 또는 일정기간 계속하여 공중에 표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이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2. "게시시설"이라 함은 광고탑·광고판과 기타 공작물로서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을 게시 또는 표시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3. "옥외광고업"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에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거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2001.7.24, 2002.12.30, 2004.12.23, 2007.12.21, 2009.4.22>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2.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3.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5. 도로·철도·공항·항만·궤도·하천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
6. 기타 미관풍치의 유지 및 도시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장소 및 물건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4. 4][대통령령 제22836호, 2011. 4. 4, 일부개정]

제10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지역 및 장소등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1.12.17, 1993.2.24, 1997.2.6, 1998.2.19, 1999.2.26, 2000.7.1, 2001.11.22, 2002.12.26, 2005.6.23, 2005.9.30, 2006.8.4, 2010.3.9, 2010.10.14, 2011.4.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3.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지정된 공원중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4. 「하천법」에 의한 하천 및 하천구역
 - 4의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유수면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6. 「자연환경보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지역 및 동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유보지역
 7.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8. 관공서, 학교, 도서관, 박물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 사찰, 교회 및 그 부속시설
 9. 화장장·장례식장 및 묘지
 10. 도시지역외의 지역의 고속국도·일반국도·지방도·군도·철도 또는 고속철도의 양측 갓길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이내의 지역. 다만, 10대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동시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버스정류장과 갓길지점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11. 교량·축대·육교·터널·고가도로 및 삭도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의 광고물등은 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2.29, 2008.7.9, 2011.4.4>

1.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시설물·점포·영업소 등에 그의 성명·상호·상표·주소·전화번호 및 영업내용(이하 "광고내용"이라 한다)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이하 "자사광고"라 한다)
2. 지정계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
- 3의2. 지정계시대에 표시하는 현수막
- 3의3.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4.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에 의하여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한다)
 -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 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경계시설의 가림간판
 - 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공공단체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을 수집·보관 또는 처리하는 지역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환경정화대상지역"이라 한다)의 가림간판
5.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유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11조(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는 물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2011.4.4>

1. 도로표지·교통안전표지·교통신호기 및 보도책
- 1의2. 전주
- 1의3. 가로등주[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주에 가로등 현수기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가로수
3. 동상 및 기념비
4. 발전소·변전소·송신탑·송전탑·가스탱크·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5. 우편함·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6. 전망대 및 전망탑

7. 담장(제10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8. 재배중인 농작물
9. 도로교통안전 및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물건

제12조(광고물등의 표시제한등) ①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1992.5.30, 1997.2.6, 1999.2.26, 2000.7.1,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그 밖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등의 표시 제한내용에 관하여는 시·군·구조례로 정한다. <개정 1997.2.6, 1999.2.26, 2005.6.2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은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려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④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이 그 주관으로 시·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그 지원계획 지역 내 해당 구청장 또는 군수에게 관할 지역 내 설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대한 의견제시와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8.7.9>

제26조(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24, 1997.2.6, 2001.11.22, 2005.6.23, 2008.7.9, 2011.4.4>

1. 삭제 <2008.7.9>

2. 철도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안내게시판·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3. 고속국도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시계탑·조명탑·교통안내소·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4. 버스승강장, 택시승강장, 노선버스안내표지판, 지정벽보판 및 현수막지정계시대
5. 그밖의 공공시설물중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편익시설물.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등이 시책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설치한 공공시설물과 제37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②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은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4, 2005.6.23, 2008.7.9>

1.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이내이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군·구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8.7.9>

제32조(표시방법의 완화)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광고물등의 표시가 미관풍치 및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지역중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안에서는 제13조 내지 제30조·제30조의2 및 제3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등중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한한다. <개정 1992.5.30, 2001.11.22, 2002.12.26, 2005.6.23>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

3. 폭 30미터이상의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특구(제10조제1항제3호·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지역 등을 제외한다)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하거나 표시방법을 완화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23>
 -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8.7.9>

□ 「도로법」

[시행 2011. 2. 5] [법률 제10001호, 2010. 2. 4, 타법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다. 도로에 연접(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

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국가사업과의 관계) 이 법에 따라 도로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으로서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것은 그 사업의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8조제2호에 따른 일반국도의 유지와 건설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책임운영기관은 제외한다)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도로의 관리청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7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업무
 2. 제87조에 따른 도로의 교통량 등 교통정보, 도로의 구조, 그 밖에 도로에 관한 사항의 조사업무와 도로 이용자에 대한 교통량 등 교통정보의 제공 업무
- ④ 제3항에 따라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위임(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한 또는 업무 수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요구, 현장조사 또는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 또는 재위임 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09.5.27>

제7조(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5.27]

제38조(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연장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

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39조(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 관리청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도로의 점용허가를 거절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교통량이 현저히 폭주하는 경우
- 2. 특별히 너비가 좁은 도로로서 교통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 3.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40조(점용공사의 대행) ①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제41조(점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제3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 등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도(제20조제2항이 적용되는 국도는 제외한다)는 대통령령으로, 그 밖의 도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2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제38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점용료

를 감면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 「도로법 시행령」

[시행 2011. 5.30] [대통령령 제22947호, 2011. 5.30, 일부개정]

제28조(점용의 허가신청)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용장소·점용기간·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등 점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의2의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4>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공작물 또는 시설의 구조
5. 공사시설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에 한한다)과 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의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법 제5조에 따라 다른 국가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17>

1. 전주·전선·변압탑·공중선·우체통·공중전화·무선전화기지국·종합유선방송용 단자함·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전기자동차 충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태양열발전시설·풍력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통신관·송열관·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표지·깃대·주차측정기·현수막 및 아치
7.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8.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 외에 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해양부령 또는 해당 관리청의 조례로 정한 것

□ 「도로표지규칙」

[시행 2008. 3.14] [국토해양부령 제4호, 2008. 3.14, 타법개정]

제2조(도로표지의 구분)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5.12.30>

1. 경계표지 : 도·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읍 또는 면 사이의 행정구역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지
2. 이정표지 : 목표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표지
3. 방향표지 : 방향 또는 방면을 나타내는 표지

4. 노선표지 : 주행노선 또는 분기노선을 나타내는 표지
5. 기타표지 :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휴게소표지, 관광지표지, 양보차로표지, 오르막차로표지, 유도표지, 예고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지점표지, 출구감속유도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시종점표지, 돌아가는길표지, 매표소표지,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아시안하이웨이안내표지

제6조(도로표지의 색채) ①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녹색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표지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기타표지 중 관광지표지의 바탕색은 갈색으로 한다. <개정 2000.3.18, 2003.5.24, 2005.12.30>

1. 도시지역(광역시·시지역중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중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외의 도로에 설치하는 경계표지·이정표지·방향표지 및 노선표지. 다만, 고속국도의 진입로를 안내하는 고속국도유도표지 및 분기점표지와 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주간선도로에 설치하는 도로 표지로서 지방지역(도시지역외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와의 연결 등 도로표지의 원활한 기능발휘를 위하여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표지는 녹색으로 한다.
 2. 기타표지 중 휴게소표지, 유도표지, 보행인표지, 주차장표지, 시설물표지, 긴급신고표지, 자동차전용도로표지 및 매표소표지(자동요금징수차로예고표지에 한한다)
- ② 도로표지의 글자 및 기호의 색은 백색으로 한다.
 - ③ 도시지역의 도로의 방향표지에 당해 도시지역밖의 주요도시명을 동시에 나타내고자 하는 때에는 녹색바탕의 사각형안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 ④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로표지에 노선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도의 경우에는 백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의 경우에는 청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지방도의 경우에는 황색바탕에 청색글자를 각각 사용한다. <개정 2000.3.18>
 - ⑤ 고속국도의 인터체인지번호를 표시하는 때에는 흑색바탕에 백색글자를 사용한다.

- ⑥고속국도의 분기점을 안내하는 방향표지는 분기되는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분기되는 고속국도가 다음에 만나게 될 고속국도까지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백색바탕에 녹색글자를 사용하여 안내한다. <신설 2005.12.30>
- ⑦도로표지의 지주는 검은 회색으로 하되, 용융아연도금을 한 지주에는 색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도로표지의 뒷면은 사용재료의 종류에 따라 색칠의 필요성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03.5.24, 2005.12.30>

제11조(도로표지의 설치기준) 도로표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도로이용자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뚜렷할 것
2. 도로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거리에서 읽을 수 있는 크기일 것
3. 글자·기호 및 바탕은 밤에도 잘 읽을 수 있도록 반사되어야 할 것
4. 설치방향은 차량의 진행방향과 직각인 방향에 설치하되, 도로형태와 설치방법에 따라 10도이내의 안쪽에 설치할 것
5. 교통신호기 또는 안전표지의 지시내용과 틀리거나 혼란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경상남도 경관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의 경관관리와 도시공공디자인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도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기본경관계획과 도내 특정지역 또는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특정경관계획을 말한다.
2. “도시디자인”이란 도시경관의 보전·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건축물·옥외광고물 및 도시시설물의 색채·형태·조명·주변과의 조화성 등에 대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3. “공공디자인”이란 도시디자인 중에서 공공기관이 설치·운영·관리하는 공간·시설·용품·정보 등의 심미적·상징적·기능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도의 책무) ① 도는 쾌적하고 양호한 경관 형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는 경관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높이고,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도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경관계획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개선하기 위하여 도 경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내용) 경관계획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와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제2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고도지구와 보존지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락지구의 경관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2. 주요조망점 또는 조망대상의 설정
3. 공동주택·공동주택단지·옥외광고물 및 가로시설물의 경관관리지침
4. 색채계획에 관한 사항
5. 야간경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공시설물의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장기적 도시경관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지사가 경관관리상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청회) ①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도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도보 및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영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
2. 발표자에 관한 사항
3.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4.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②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과 진행,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계획 위임) 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은 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별도의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은 제12조에 따른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로 하여금 심의 또는 자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장 경관사업

제8조(사업 대상) 도지사는 도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공공시설물의 경관형성에 관한 사업
2. 경관지구·미관지구 안에서의 경관정비와 관련된 사업
3. 법 제6조제3호에 따라 수립된 경관사업
4. 건축물의 녹화사업을 위한 옥상조경 등
5. 건물·교량 등 아름다운 도시 야간경관의 관광자원화 사업
6. 그 밖에 제12조에 따른 도시디자인위원회에서 경관사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사업계획서)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된 경관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8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경관사업의 해당 범위

3. 사업비 산출 근거
4. 경관사업비의 조달 방법
5. 경관사업계획 관련 설계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과 관련된 사례검토 등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경관사업에 따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시장·군수 또는 위원회가 우수경관사업으로 평가한 사업
3.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
4. 제19조에 따른 전문위원의 설계·시공 등에 대한 예술적 검토·연구비
5.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수행한 경관사업의 유지관리 비용
6. 그 밖에 도지사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비

제11조(평가) ① 도지사는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의 포상을 할 수 있다.

제4장 도시디자인위원회

제12조(설치) 경관 및 도시디자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법령 및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사항
3.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4. 별표 1의 공공건축물 중 공동주택인 경우 「경상남도 건축조례」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09.08.13>
5. 도에서 발주하는 별표 2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이하 “도시시설물”이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국립공원구역 안에 건축하는 건축물 중에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위원회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위원은 청정환경국장·도시건설방재국장·문화관광체육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0.11.04>

1. 도의회 의원
2. 관계 공무원
3. 도시·건축·환경보전·공공디자인 등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

제1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 ② 회의는 회의 때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

하되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사전검토)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10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전문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 ② 전문위원은 제13조에 따른 사업의 설계·시공·준공단계까지 기술적·예술적 부분에 참여하여 자문을 하며, 위원회 심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고, 출석·발언할 수 있다.
- ③ 전문위원은 계약직으로 할 수 있으며, 임기 등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소위원회) ① 도지사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소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디자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③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21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경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공무원이 아닌 전문위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공동위원회)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6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장제4절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을 수립한 지역에서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공동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위원회 심의에 관하여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주된 공공건축물 및 도시시설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안번호 제2011 - 54호>

거창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 가. 제출일자: 2011. 8. 24.
- 나. 제출자: 거창군수
- 다. 회부일자: 2011. 8. 24.

2. 개정이유

- 지방세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우대 및 지원을 함으로써 성실 납세자에게는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군민에게는 귀감이 되게 하여 자진납세풍토조성 및 자주재원확보에 기여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을 정의함(안 제1조)
- 나. “성실납세자”와 “유공납세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성실납세자: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
 - 유공납세자: 성실납세자 중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한 자
- 다.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을 정함(안 제4조)
 - 성실납세자: 지방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산 추첨
 - 유공납세자: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
- 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함(안 제5조)

- 상품권, 금고기관을 통한 예금·대출금리 우대, 인증서 또는 현판 수여, 세무조사 유예(3년간)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8조, 「거창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 나. 예산조치: 2011년도 예산확보(1천만원)

다. 합의: 기획감사실(법무통계담당)

라. 입법예고(2011. 6. 30. ~ 7. 20.) 결과: 특기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성실납세자 우대 및 납세편의 개선 지침」이 행정안전부에서 시달(2011. 5. 11.)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서
- 그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성실·유공납세자에 대한 용어의 뜻을 정의하고
 -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과 성실·유공납세자의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규칙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고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 개정조례와 관련한 기타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6. 참고자료

- 관련법령 발취

- 「지방세기본법」

[시행 2011 5.30][법률 제10415호, 2010.12.27, 일부개정]

제7조(지방세의 세목) ① 지방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한다.

② 보통세의 세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세
2. 등록면허세
3. 레저세
4. 담배소비세
5. 지방소비세
6. 주민세
7. 지방소득세
8. 재산세
9. 자동차세

③ 목적세의 세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자원시설세
2. 지방교육세

제8조(지방자치단체의 세목) ①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광역시의 군(郡) 지역에서는 제2항에 따른 도세를 광역시세로 한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레저세
 - 다. 담배소비세

- 라. 지방소비세
- 마. 주민세
- 바. 지방소득세
- 사. 자동차세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② 도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

- 가. 취득세
- 나. 등록면허세
- 다. 레저세
- 라. 지방소비세

2. 목적세

- 가. 지역자원시설세
- 나. 지방교육세

③ 구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등록면허세
- 2. 재산세

④ 시·군세(광역시의 군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담배소비세
- 2. 주민세
- 3. 지방소득세
- 4. 재산세
- 5. 자동차세

□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2010.05.06 조례 제1975호

제9조(요금의 감면) ① 노상 및 직영 노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공용차량
3. 성실납세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기여한 공로로 모범납세 표창을 받은자의 소유차량으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성실납세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스티커 교부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에 한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한 적용대상 참전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5.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② 노상 및 직영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 장애인 자가운전 자동차 및 장애인을 동반한 승용자동차
2. 승용차 10부제 참여를 위해 1일 회수권을 이용하는 자동차
3. 배기량 1,000cc 미만 자동차(경형자동차)